

## 시행권 포기 약정서

사업에 대한 표시


위 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65-5 (권 [redacted] 지분 전부 5432분의 610)			
건축주(시행사)	권 [redacted]			
건축허가 내용	허가번호	연면적 (m <sup>2</sup> )	주용도	비고
	2018-종합허가과-신축허가-56	1,141.61	단독주택	

‘시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업의 토지 소유권, 공사중인 건축물 및 본 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리 (‘시행권’)를 주식회사 워런딩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

- 가. ‘시행사’에게 부도, 파산, 회생절차, 청산 등의 개시신청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
- 나. ‘회사’와 협의 없이 최초 계약시점의 예정공정률 대비 설계/감리자의 공정률 계산표 또는 ‘회사’의 공정확인상 실행공정률 (누계)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다. ‘클라우드 펀딩 계약서’ 제7조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 라. 대상건물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되는 경우
- 마. ‘시행사’가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5일 이전에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사’는 담보물의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주식회사 워런딩대부를 매수인으로하여 제출 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한다. ‘시행사’는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3개월마다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권’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며 본 사업에 제3의 권리자 (수분양자 및 채권자 등) 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된 의무 또는 채무는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2018년 9월 19일

구분	계약 주체 정보		서명
건축주 (시행사)	성명 (상호)	권 [redacted]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주소	[redacted]	

## 시행권 포기 약정서

## 사업에 대한 표시


위 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65-5 (나 [redacted] 지분 전부 5432분의 469)			
건축주(시행사)	나 [redacted]			
건축허가 내용	허가번호	연면적 (m <sup>2</sup> )	주용도	비고
	2018-종합허가과-신축허가-56	1,141.61	단독주택	

'시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업의 토지 소유권, 공사중인 건축물 및 본 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리 ('시행권')를 주식회사 워편딩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

- 가. '시행사'에게 부도, 파산, 회생절차, 청산 등의 개시신청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
- 나. '회사'와 협의 없이 최초 계약시점의 예정공정률 대비 설계/감리자의 공정률 계산표 또는 '회사'의 공정확인상 실행공정률 (누계)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다. '클라우드 편딩 계약서' 제7조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 라. 대상건물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되는 경우
- 마. '시행사'가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5일 이전에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사'는 담보물의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주식회사 워편딩대부를 매수인으로 하여 제출 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한다. '시행사'는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3개월마다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권'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며 본 사업에 제3의 권리자 (수분양자 및 채권자 등) 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된 의무 또는 채무는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2018년 9월 19일

구분	계약 주체 정보		서명
건축주 (시행사)	성명 (상호)	나 [redacted]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주소	[redacted]	

## 시행권 포기 약정서

### 사업에 대한 표시

위 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65-5 (이 [redacted] 지분 전부 5432분의 744)			
건축주(시행사)	이 [redacted]			
건축허가 내용	허가번호	연면적 (m <sup>2</sup> )	주용도	비고
	2018-종합허가과-신축허가-56	1,141.61	단독주택	

'시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업의 토지 소유권, 공사중인 건축물 및 본 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리 ('시행권')를 주식회사 워런딩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

- 가. '시행사'에게 부도, 파산, 회생절차, 청산 등의 개시신청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
- 나. '회사'와 협의 없이 최초 계약시점의 예정공정물 대비 실제/감리자의 공정물 계산표 또는 '회사'의 공정확인상 실행공정물 (누계)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다. '크라우드 펀딩 계약서' 제7조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 라. 대상건물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되는 경우
- 마. '시행사'가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5일 이전에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사'는 담보물의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주식회사 워런딩대부를 매수인으로써 제출 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등의서를 작성한다. '시행사'는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3개월마다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권'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재판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며 본 사업에 제3의 권리자 (수분양자 및 채권자 등) 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된 의무 또는 채무는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2018년 9월 19일

구분	계약 주체 정보		서명
건축주 (시행사)	성명 (상호)	이 [redacted]	[redacted]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주소	[redacted]	

## 시행권 포기 약정서

사업에 대한 표시


위 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65-5 (김용주 지분 전부 5432분의 638)			
건축주(시행사)	김 용 주			
건축허가 내용	허가번호	연면적 (m <sup>2</sup> )	주용도	비고
	2018-종합허가과-신축허가-56	1,141.61	단독주택	

'시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업의 토지 소유권, 공사중인 건축물 및 본 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리 ('시행권')를 주식회사 워편딩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

- 가. '시행사'에게 부도, 파산, 회생절차, 경산 등의 개시신청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
- 나. '회사'와 협의 없이 최초 계약시점의 예정공정률 대비 설계/감리자의 공정률 계산표 또는 '회사'의 공정확인상 실행공정률 (누계)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다. '클라우드 펀딩 계약서' 제7조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 라. 대상건물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되는 경우
- 마. '시행사'가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5일 이전에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사'는 담보물의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주식회사 워편딩대부분 매수인으로써 제출 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한다. '시행사'는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3개월마다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권'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며 본 사업에 제3의 권리자 (수분양자 및 채권자 등) 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된 의무 또는 채무는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2018년 9월 19일

구분	계약 주체 정보		서명
건축주 (시행사)	성명 (상호)	김·용·주	
	주민등록번호	750630-1*****	
	주소	경기도 광주시 이배제로 155-40, 207동 201호 (목현동, 워너스힐)	

## 시행권 포기 약정서

사업에 대한 표시


위 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65-5 (마길 ) 지분 전부 5432분의 469)			
건축주(시행사)	마 ( )			
건축허가 내용	허가번호	연면적 (m <sup>2</sup> )	주용도	비고
	2018-중합허가과-신축허가-56	1,141.61	단독주택	

‘시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업의 토지 소유권, 공사중인 건축물 및 본 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리 (‘시행권’)를 주식회사 위편딩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

- 가. ‘시행사’에게 부도, 파산, 회생절차, 청산 등의 개시신청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
- 나. ‘회사’와 협의 없이 최초 계약시점의 예정공정률 대비 설계/감리자의 공정률 계산표 또는 ‘회사’의 공정확인상 실행공정률 (누계)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다. ‘클라우드 펀딩 계약서’ 제7조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 라. 대상건물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되는 경우
- 마. ‘시행사’가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5일 이전에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사’는 담보물의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주식회사 위편딩대부를 매수인으로하여 제출 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한다. ‘시행사’는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3개월마다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권’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며 본 사업에 제3의 권리자 (수분양자 및 채권자 등) 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된 의무 또는 채무는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2018년 9월 19일

구분	계약 주체 정보		서명
건축주 (시행사)	성명 (상호)	마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시행권 포기 약정서

### 사업에 대한 표시

위 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65-5 (박 [redacted] 지분 전부 5432분의 570)			
건축주(시행사)	박 [redacted]			
건축허가	허가번호	연면적 (m <sup>2</sup> )	주용도	비고
내용	2018-종합허가과-신축허가-56	1,141.61	단독주택	

'시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업의 토지 소유권, 공사중인 건축물 및 본 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리 ('시행권')를 주식회사 워편딩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

- 가. '시행사'에게 부도, 파산, 회생절차, 청산 등의 개시신청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
- 나. '회사'와 협의 없이 최초 계약시점의 예정공정률 대비 설계/감리자의 공정률 계산표 또는 '회사'의 공정확인상 실행공정률 (누계)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다. '클라우드 편딩 계약서' 제7조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 라. 대상건물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되는 경우
- 마. '시행사'가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5일 이전에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사'는 담보물의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주식회사 워편딩대부를 매수인으로서 제출 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를 작성한다. '시행사'는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3개월마다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권'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며 본 사업에 제3의 권리자 (수분양자 및 채권자 등) 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된 의무 또는 채무는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2018년 9월 19일

구분	계약 주체 정보		서명
건축주 (시행사)	성명 (상호)	박 [redacted]	[redacted]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주소	[redacted])	

## 시행권 포기 약정서

### 사업에 대한 표시


위 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65-5 (지번 전부 5432분의 919)			
건축주(시행사)	최			
건축허가 내용	허가번호	연면적 (m <sup>2</sup> )	주용도	비고
	2018-종합허가과-신축허가-56	1,141.61	단독주택	

'시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업의 토지 소유권, 공사중인 건축물 및 본 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리 ('시행권')를 주식회사 워런딩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

- 가. '시행사'에게 부도, 파산, 회생절차, 청산 등의 개시신청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
- 나. '회사'와 협의 없이 최초 계약시점의 예정공정률 대비 설계/감리자의 공정률 계산표 또는 '회사'의 공정확인상 실행공정률 (누계)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다. '크라우드 펀딩 계약서' 제7조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 라. 대상건물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되는 경우
- 마. '시행사'가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5일 이전에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사'는 담보물의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주식회사 워런딩대부를 매수인으로 하여 제출 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한다. '시행사'는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3개월마다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권'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며 본 사업에 제3의 권리자 (수분양자 및 채권자 등) 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된 의무 또는 채무는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2018년 9월 19일

구분	계약 주체 정보		서명
건축주 (시행사)	성명 (상호)	최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행권 포기 약정서

### 사업에 대한 표시


위 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65-5 (정: [redacted] 지분 전부 5432분의 1013)			
건축주(시행사)	정 [redacted]			
건축허가 내용	허가번호	연면적 (m <sup>2</sup> )	주용도	비고
	2018-종합허가과-신축허가-56	1,141.61	단독주택	

'시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업의 토지 소유권, 공사중인 건축물 및 본 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리 ('시행권')를 주식회사 워편딩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

- 가. '시행사'에게 부도, 파산, 회생절차, 청산 등의 개시신청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
- 나. '회사'와 협의 없이 최초 계약시점의 예정공정률 대비 설계/감리자의 공정률 계산표 또는 '회사'의 공정확인상 실행공정률 (누계)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다. '클라우드 펀딩 계약서' 제7조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 라. 대상건물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되는 경우
- 마. '시행사'가 제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5일 이전에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사'는 담보물의 제도용인감증명서를 주식회사 워편딩대부를 대수인으로서하여 제출 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한다. '시행사'는 제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3개월마다 갱신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권'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며 본 사업에 제3의 권리자 (수분양자 및 채권자 등) 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된 의무 또는 채무는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2018년 9월 19일

구분	계약 주체 정보		서명
건축주 (시행사)	성명 (상호)	정 [redacted]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주소	[redacted]	